

3.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중개정령

대통령령 제16,591호 1999. 10. 30.

개 정 이 유

건설기술관리법이 개정(1999. 4. 15, 법률 제5964호)되어 품질검사전문기관의 지정체가 등록제로 전환되고 건설자재 품질보증제도 등이 폐지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며, 기타 건설에 관한 신기술지정제도를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 요 골 자

- 가. 종전에는 발주청의 설계자문위원회 위원을 공무원 및 관계전문가로 한정하였으나, 앞으로는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공 건설공사에 대한 시민참여의 기회를 확대함(영 제21조제2항 신설).
- 나. 종전에는 신기술로 지정된 건설기술을 현장적용실적에 관계없이 5년 이상 10년 이하의 기간동안 자금지원 등을 통하여 보호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최초 지정시에는 보호기간을 3년으로 하고, 지정후 현장적용실적을 감안하여 7년의 범위내에서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현장에 실제로 적용되는 신기술 위주로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영 제34조의2 신설).
- 다.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건설현장을 점검할 수 있는

공사를 종전에는 모든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하였으나, 앞으로는 총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와 건축물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공사로 한정함으로써 현장점검이 내실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과 아울러 건설현장에 대한 행정기관의 과도한 관여를 줄여 현장종사자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함(영 제38조의11제1항 신설).

라. 설계 및 시공평가를 하는 경우 종전에는 당해 설계 또는 건설공사를 발주한 다음 연도에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기본설계에 대한 평가는 실시설계가 완료된 후에, 실시설계와 시공에 대한 평가는 당해 건설공사가 완료된 후에 평가하도록 평가시기를 조정함으로써 현장상황에 부합되는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영 제57조제3항),.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4호중 “공유수면매립면허를 받은 자로서 면허관청이 설계감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공유수면매립면허를 받은 자”로 하고, 동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신항만건설촉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항만건설사업시행자의 지정을 받은 자
제7조의2제1항 내지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전문회사로 하여금 책임감리를 하게 하여야 할 건설공사의 발주청과 건축법시행령 제19조 및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4조의6의 규

정에 의하여 감리원 또는 감리전문회사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여 감리를 하게 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의 허가·인가·승인 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이하 이 조에서 “발주청등”이라 한다)은 그가 시행하거나 허가·인가·승인 등을 한 건설공사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그 내용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에 대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감리용역 계약의 성립 또는 변경
2. 감리원의 배치 또는 변경
-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내용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 ③건설교통부장관은 감리원·감리전문회

사 또는 발주청드으로부터 감리용역수행 현황·감리원경력 또는 감리원보유현황에 관한 확인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에 대한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7조의3제4호중 “시설안전기술공단·안전진단전문기관 및 유지관리업자”를 “시설안전기술공단 및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하고, 동조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6.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검사전문기관

7.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 등 승인을 얻어 건설공사에 소요되는 레디믹스트콘크리트·아스팔트콘크리트 또는 철강재를 생산 또는 제조하는 업체

제9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호를 삭제하며, 동조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도입건설기술에 관한 사항

8.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8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형공사의 입찰방법 및 그 심의기준에 관한 사항

제10조제3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4항 내지 제7항을 각각 제5항 내지 제8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은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때에는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자를 위원정수의 5분의 1의 범위내에서 사안별로 일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 또는 위촉되는 자중 동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20인을 초과할 수 없다.

제13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후단·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하고,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서류의 작성 및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제15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발주청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관계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발주청(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자문위원회가 구성된 발주청에 한한다)의 장 : 설계자문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내용 및 동의위원회의 전년도 운영실적

제16조제1항중 “조치내용을 당해 건설공사착공전에”를 “조치내용을”로 하고, 동조제2항 내지 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19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의 설계의 타당성과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 시행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다만,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자문위원회이 자문을 받은 건설공사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건설공사를 제외한다.

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납입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한 기업체가 시행하는 건설공사로서 총 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나. 총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로서 당해 건설공사에 관한 허가·인가·승인 등을 한 행정기관(국가기관을 제외한다)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특별히 요청하는 공사

다.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의 설계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기본적인 계획 또는 공법이 변경되는 공사

③지방위원회의 위원은 중앙위원회,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위원회, 특별위원회, 설계자문위원회 또는 관계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자 및 당해 분야의 전문가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정수의 5분의 1의 범위내에서 사안별로 일시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제20조제1항중 “120인이내”를 “200인 이내”

로 하고, 동조제3항제1호중 “30억원이상”을 “100억원 이상”으로 하며, 동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제1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의 기본적인 설계 또는 공법 등의 변경에 관한 사항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설계자문위원회) ①발주청은 건설공사의 안전과 시공의 적정성등 설계의 타당성을 사전에 검토하고 시설물의 적정한 유지관리 등을 위하여 설계등 용역에 대하여 발주청의 자문에 응하는 설계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설계자문위원회의 위원은 중앙위원회, 지방위원회, 특별위원회, 다른 발주청의 설계자문위원회 또는 관계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자 및 당해분야의 전문가중에서 발주청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발주청은 원활한 자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정수의 5분의1의 범위내에서 사안별로 일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경우에는 발주청은 설계등 용역의 수행단계에서 1회 이상 설계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설계등 용역이 규모가 작거나 자문을 받을 만한 중요한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발주청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문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결과를 설계에 반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설계자문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새로운 기술·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된 사항
2.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9조제2항 단서·제85조제6항 및 제9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대형공사의 일괄입찰·대안입찰 등에 관한 사항
3.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8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대형공사의 입찰방법에 관한 사항
4. 총공사비가 500억원(기초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공법변경 등 중대한 설계변경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5.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1종시설물의 정밀안전진단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⑥설계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발주청이 정한다.

제28조제1항 본문중 “연구원으로 하여금 건설기술정보에 관한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

하게 하고”를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하며”로 하고, 동조제2항중 “거부 또는 제한하게 할 수 있다.”를 거부 또는 제한할 수 있다.”로 한다.

제2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건설정보통합전산망의 구성·운영)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 1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정보통합전산망을 구성·운영하기 위한 기본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건설정보통합전산망의 효율적인 구축을 위하여 건설과 관련된 업체·기관 또는 단체와의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③건설교통부장관은 건설정보통합전산망의 효율적인 구축과 활용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할 수 있다.

1. 건설정보통합전산망의 구성·운영에 관한 각종 연구개발 및 기술지원
2. 건설정보통합전산망의 구축을 위한 공동사업의 시행
3. 건설정보통합전산망의 표준화
4. 건설정보통합전산망을 이용한 정보의 공동활용 촉진
5. 기타 건설정보통합전산망의 구축·활용의 촉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9조의2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

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제3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신기술의 명칭 및 개발배경
2. 신기술의 내용(신기술의 요지 및 지정 요건인 신규성·유일성진보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한다) 및 범위
7. 시방서 및 유지관리지침서
8. 기타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검사전문기관이 발행한 각종 시험성적서 및 시험시공결과 등 신기술의 평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32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가지지 아니한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가진 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제3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2조의2(신기술의 지정절차) ①건설교통부장관은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기술의 지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된 기술이 신기술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전문기관의 심사를 거쳐 90일 이내에 신기술의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된 기술이 신기술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대한 평가를 함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 및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건설교통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때에는 신청된 기술에 관한 주요내용을 30일 이상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기관은 신청된 기술의 심사를 위하여 신기술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⑤신기술의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3조(신기술의 지정·고시) ①건설교통부장관은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신기술을 지정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고 신청인에게 신기술지정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1. 신기술의 명칭
2. 신기술의 내용 및 범위
3. 개발 또는 개량한 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4.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5. 제3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의 보

호기간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기술을 지정·고시한 때에는 제3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기관에 그 내용을 통지하여 유지·관리하게 하여야 한다.

제34조제4항중 “신기술을 그가 시행하는”을 “신기술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가 시행하는”으로 하고, 동조제5항제1호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한 한국산업은행 또는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한 중소기업은행의 기술개발자금

⑥법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기술의 지정을 받은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기술의 활용실적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4조의2를 제34조의3으로 하고, 제3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4조의2(신기술의 보호기간) ①법 제1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의 보호기간은 신기술의 지정·고시일부터 3년의 범위내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의 보호기간은 당해 신기술의 활용실적 등을 검증하여 7년의 범위내에서 이를 다시 정할 수 있다.

③제32조의2 및 제33조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기간을 다시 정함에 있어 이를 준용한다.

제35조중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을 “외국인투자촉진법”으로, “통보된 사항에 대하여는 건설기술정보센터에 송부하여”를 “통보된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유지·관리하고”로 한다.

제35조의2를 삭제한다.

제37조제1항 본문 및 제38조제1항중 “제6호”를 각각 “제7호”로 한다.

제38조의7을 삭제한다.

제38조의11의 제목중 “점검에 따른 조치”를 “점검 등”으로 하고, 동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3항(중전의 제2항)중 “제1항제3호”를 “제2항제3호”로 한다.

①법 제21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현장등을 점검할 수 있는 건설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2. 건축물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공사
3. 기타 건설공사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제38조의12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47조의2제1항제1호 내지 제7호의 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가 시행하는 설계로서 당해 기관 또는 공사의 소속직원이 용역감독업무를 수행하는 설계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제8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괄입찰의 실시설계 적격자가 시행하는 실시설계를 제외한다.

제39조를 삭제한다.

제39조의2제1항중 “건설교통부장관은 제39조의3의 규정에 의한 건설표준화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 제23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23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으로 한다.

제39조의3을 삭제한다.

제40조에 제3항 내지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발주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관리업무의 적정수행여부를 확인하고자 하는 때에는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발주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결과 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정을 요구받은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지체없이 이를 시정한 후 그 결과를 발주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발주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관리업무의 적정수행여부의 확인을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공립시험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42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경영책임

제42조제3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시간경과 또는 장소이동 등으로 인하여 재료의 품질변화가 우려되어 발주자가 품질시험 또는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3조의 제목“(품질보증계획의 수립절차)”를 “(품질보증계획 등의 수립절차)”로 하고, 동조제1항 내지 제3항중 “품질보증계획”을 각각 “품질보증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으로 한다.

제44조, 제47조의3 및 제47조의4를 각각 삭제한다.

제48조제1항제2호중 “국립기술품질원”을 “기술표준원”으로 하고, 동조제2항제2호중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3항중 “계량및측정에관한법률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공인시험·검사기관의 지정분야를 새로이 지정받게 하는 등”을 “국가표준기본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시험·검사기관의 인정을 받은 분야를 새로이 등록하게 하는 등”으로 한다.

2. 국가표준기본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시험·검사기관의 인정을 받은 분야현황

제49조의 제목“(품질검사전문기관의 지정 등)”을“(품질검사전문기관의 등록 등)”으로 하고, 동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2항중“품질검사전문기관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을“품질검사전문기관으로등록하고자 하는 자는”으로, “지정신청서”를“등록신청서”로 하고, 동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검사전문기관으로 등록할 수 있는 자는 별표 2의 요건을 갖춘 자로 한다.

③건설교통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국가표준기본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시험·검사기관의 인정을 받은 분야가 등록하고자 하는 전문분야에 적합한지의 여부 또는 별표 2의 요건을 갖추었는지의 여부를 검토한 후 전문분야별로 등록하여야 한다.

제49조제5항 각호의 부분 본문중 “지정받은 자”를 “등록한 자”로 하고, 동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국가표준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시험·검사기관의 인정을 받은 분야 제49조제6항 본문중 “품질검사전문기관을 지정하거나 지정”을 “품질검사전문기관의 등록

을 받거나 등록”으로 하고, 동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등록 또는 등록취소연월일

2. 등록번호

제51조제1항중 “도급받은 자의 계열회사인 감리전문회사를”을 “도급받은 자(설계·시공 일괄입찰에 의하여 공동도급계약을 한 경우에는 공동수급자 각각을 말한다) 및 도급받은 자의 계열회사를 감리전문회사로”로 하고, 동조제3항을 삭제하며, 동조제5항 각호외의 부분 전단중 “제6호”를 “제7호”로, “감리전문회사는 다음 각호의 자가 선정한다.”를 “감리전문회사의 선정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로 하고, 동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신항만건설촉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신항만건설사업 : 사업시행자를 지정한 자

제52조제4항중 “제5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책임감리대가기준에서 정한 감리원의 수와 최소배치기준등에 따라”를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배치기준에 따라”로 하고, 동조제5항중 “책임감리대가기준에서 정한 인원이하로”를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배치기준 이하로”로 하며, 동조제6항중 “책임감리대가기준에서 정한 감리원의 수보다”를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배치기준보다”로 하고, 동조제9항중 “감리원의 배치기준, 경력확인 및 관리, 공사현장의 상주등”을 “감리원의 배치방법 및 공

사현장의 상주 등”으로 한다.

제52조의2를 삭제한다.

제52조의3의 제목 “(업무담당자의 업무)”를 “(발주청의 지원업무)”로 하고, 동조 본문중 “소속직원중에서 업무담당자를 지정하여”를 “그 소속직원으로 하여금”으로, “업무담당자의 업무수행”을 “발주청 소속직원의 업무수행”으로 하며,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발주청의 소속직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 감리용역발주자로서의 감독업무, 감리용역업자와 계약으로 정한 사항 기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외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감리원의 업무에 개입 또는 간섭하거나 감리원의 권한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4조의3, 제54조의6 및 제56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57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항중 “당해 용역 또는 건설공사를 발주한 연도의 다음 연도 2월말까지 실시하여야 한다”를 “기본설계의 경우에는 실시설계가 준공된 연도의 다음 연도 2월말까지, 실시설계 및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당해 건설공사가 준공된 연도의 다음 연도 2월말까지 각각 실시하여야 한다.”로 한다.

1. 건설기술용역사업 : 계약금액이 1억5천만원 이상인 기본설계 또는 실시설계

제58조제4항중 “5월말”을 “3월말”로 한다.

제58조의2제1항중 “최근 3년이내에 5건이상”을 “당해 발주청에서 최근 3년 이내에 2건이상”으로 한다.

제59조제1항 본문중 “발주한 연도의 다음 연도 6월말”을 “준공한 연도의 다음 연도 4월말”로 하고, 동항제1호중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을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하며, 동조제2항중 “1년으로 한다.”를 “공고일부터 1년으로 한다.”로 한다.

제59조의5의 제목 및 본문중 “한국건설기술인협회”를 각각 “건설기술인협회”로 한다.

제60조제1항중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건설업자와 그 전문건설업자에”를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 및 전문건설업자와 그에”로 하고, 동조제2항제2호를 삭제하며, 동항에 제4호의2 내지 제4호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항에 7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항제9호 단서중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건설업자와 그 전문건설업자에”를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 및 전문건설업자와 그에”로 하고, 동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검사전문기관의 등록 및 변경등록

4의3. 법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검

사전문기관에 대한 조사 및 시정명령 등

- 4의4.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검사전문기관의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명령
7. 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의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
10. 제4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시험·검사에 사용되는 장비·기술인력현황 등의 접수

제60조제4항중 “그 처리현황을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달 말일까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를 “그 처리내용을 건설교통부장관이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하는 기관에 통보하고, 그 처리현황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다음해 1월 31일까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6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1조(업무의 위탁) ①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건설교통부장관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하는 기관에 위탁한다.

1. 법 제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자 신고사항의 접수
2. 법 제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력수첩의 발급 및 기록사항의 유지·관리
3. 법 제6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력

확인

4. 법 제6조의3의 규정에 의한 취업 및 퇴직상황보고의 접수
5.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정보체제의 구축·보급 및 운영에 관한 업무
6. 법 제15조의2의 규정에 의한 건설정보통합전산망의 구성·운영에 관한 업무
7.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에서 도입된 건설기술의 관리에 관한 업무
8. 법 제21조의4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실별점의 종합관리
9. 법 제24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인증을 위한 전문·기술적인 심사
10. 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의 변경등록(감리원의 변경인 경우에 한한다)
11. 법 제28조의2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증의 교부 및 관리
12. 제7조의2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용역계약 및 감리원배치통보의 접수, 통보받은 내용의 유지·관리, 감리용역수행현황·감리원경력 및 감리원보유현황에 대한 확인서의 발급
13.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신청서의 접수
14. 제32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해관계인 등에 대한 의견조회
15. 제3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활

용실적의 접수 및 관리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위탁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과 장비를 갖춘 기관중에서 이를 지정·고시한다.

1. 법 제36조의2 또는 법 제36조의8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협회
 2. 건설산업기본법·건축사법·기술사법·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주택건설촉진법 또는 측량법에 의하여 설립된 협회
 3.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 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4.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설립된 비영리법인
- ③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위탁받을 기관의 명칭·주소·대표자와 위탁할 업무의 내용 및 처리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의 위탁을 받은 기관은 위탁업무의 처리결과를 매반기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달 말일까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별표 1의2 제3호 2급란의 건축분야란중 “SWS490급 강제”를 “SM490급 강제”로 한다.
별표 2의 제목중 “지정기준”을 “등록기준”으

로 하고, 동표 제1호가목(1)중 “품질관리·시험 또는 검사업무”를 “토목분야의 품질관리·시험 또는 검사업무”로 하며, 동목(2)중 “품질관리·시험 또는 검사업무”를 “건축분야의 품질관리·시험 또는 검사업무”로 하고, 동목(3)중 “품질시험 또는 검사업무”를 “토목 또는 건축분야의 품질시험 또는 검사업무”로 하며, 동목(5)·(6) 및 (7)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목(8)중 “건설재료시험기능사”를 “건설재료시험산업기사·건설재료시험기능사”로 하며, 동호나목중 “지정받고자”를 “등록하고자”로 하고, 동호다목을 삭제하며, 동호라목중 “지정”을 “등록”으로 한다.

(5)방직기사·방직산업기사 : 국가표준기본법에 의한 인정분야가 섬유 및 직조물과 그 관련 제품분야인 시험·검사기관 또는 섬유분야의 품질검사전문기관에서 방직기사인 경우 5년 이상, 방직산업기사인 경우 3년 이상 품질시험 또는 검사업무를 담당한 자

(6)용접기사·용접산업기사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철강재설치공사업 또는 강구조물공사업의 등록을 한 건설업체나 용접분야의 품질검사전문기관에서 용접기사인 경우 5년 이상, 용접산업기사인 경우 3년 이상 용접을 실시하거나 용접에 대한 품질시험 또는 검사업무를 담당한 자

(7)비파괴검사기사·비파괴검사산업기사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철강재설치공사업

또는 강구조물공사업의 등록을 한 건설업체나 용접분야의 품질검사전문기관에서 비파괴검사기사인 경우 5년 이상, 비파괴검사산업기사인 경우 3년 이상 비파괴검사업무를 담당한 자

별표 2 제2호가목(3), 동표 제3호가목(3) 및 제4호가목(3)중 “건설재료시험기능사”를 각각 “건설재료시험산업기사 또는 건설재료시험기능사”로 한다.

별표 2 제5호가목(1) 및 나목(1)중 “건설재료시험기능사”를 “건설재료시험산업기사·토목산업기사·건축산업기사 또는 건설재료시험기능사”로 하고, 동호나목(3)중 “공기량시험기”를 “공기량시험기, 압축시험기(100톤 이상)”로 하며, 동호다목(1)중 “건설재료시험기능사”를 “건설재료시험산업기사·토목산업기사 또는 건설재료시험기능사”로 하고, 동호라목(1)중 “건설재료시험기능사”를 “건설재료시험산업기사 또는 건설재료시험기능사”로 하며, 동호 마목 (1)중 “건설재료시험기능사”를 “건설재료시험산업기사·방직산업기사 또는 건설재료시험기능사”로 하고, 동호바목(1)중 “건설재료시험기능사”를 “용접산업기사·비파괴검사산업기사·건설재료시험산업기사·건설재료시험기능사”로 한다.

별표 3의 비고 제1호중 “건설기술분야”를 “건설직무분야”로, “산업응용(응용지질)”을 “건축(건축일반시공·조적·건축목공·목재

창호), 산업응용(응용지질)”으로, “배관설비”를 “배관설비·보일러”로, “해양(해양·해양자원개발·해양공학)분야”를 “해양(해양·해양자원개발·해양공학), 안전관리(기계안전·화곡안전·전기안전·산업위생관리·가스)분야”로 하고, 동표의 비고 제4호중 “기술분야”를 “직무분야”로 한다.

별표 6중 제8호란을 삭제한다.

별표 7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7 제12호의 개정규정은 2000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②(신기술의 지정 등에 관한 적용례) 신기술의 지정 등에 관한 제32조 내지 제34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신기술지정을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③(품질검사전문기관의 등록기준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검사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은 제47조의2 각호의 기관 및 농지개량조합법에 의한 농지개량조합연합회에 대하여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되, 이 영 시행후 보유기술인력을 다른 자로 교체하는 경우에는 별표 2의 등록기준에 의한 기술자격을 가진 자로 교체하여야 한다.

[별표 7]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태료금액 (제63조제3항관련)

위 반 행 위	해당법조문	과태료금액
1. 정당한 사유없이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 훈련을 받지 아니한 자	법 제43조 제1항제1호	50만원 이하
2. 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고용자가 교육을 받는 데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지 아니한 자	법 제43조 제1항제1호	50만원 이하
3. 법 제6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자의 취업 및 퇴직상황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자	법 제43조 제1항제2호	100만원 이하
4.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자	법 제43조 제1항제3호	300만원 이하
5. 법 제25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법 제43조 제1항제3호의2	50만원 이하
6. 법 제25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위로 변경등록을 한 자	법 제43조 제1항제3호의2	200만원 이하
7.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자	법 제43조 제1항제3호의3	300만원 이하
8. 법 제28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법 제43조 제1항제4호	50만원 이하
9. 법 제28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위로 변경등록을 한 자	법 제43조 제1항제4호	200만원 이하
10. 법 제30조제1항·제2항 또는 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자로서 그 업무정지 기간중에 책임감리를 한 자(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책임감리를 한 경우를 제외한다)	법 제43조 제1항제5호의2	300만원 이하
11. 법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상호를 바꾸어 책임감리용역을 수주한 자	법 제43조 제1항제6호	100만원 이하
12. 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관계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법 제43조 제1항제7호	200만원 이하

주택회보